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63호 /12월 24일

중국의 내국민대우 실시현황과 외자정책 조정

1. 개요

-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 원칙에 따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內國民待遇 적용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.
 -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국내의 외국기업, 외국인, 외국상선 등에 대해서 국내기업, 내국인, 국내상선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임.
 -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은 상호호혜의 국제조약에 따라,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투자활동, 자산관리 및 이와 관련된 법률집행이나 법률구제 등의 측면에서 국내기업이나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임.

2.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현황

-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고 있음.
 - ▲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“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”에 내국민

대우 원칙을 명기하였고, ▲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“베를린 조약”, “세계판권협약” 등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, ▲“민사소송법”, “형사소송법”에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해 중국인 및 중국기업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명기하고 있음.

□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, 이는 외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-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일정을 발표하였는바,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, 부동산, 전신, 항공 등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원칙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음.
- 상품무역 분야에서 외자기업은 2-3년 내에 수출입권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, 운송업 등의 분야에서도 자율권을 누리게 됨.
- 조세 분야에서 유통세 개혁을 통해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을 통일하고, 종업원도 동일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됨.
-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10%,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30% 이상을 유치하였음. 올해에는 전세계 1위의 외자유치국가로 부상하였음.

□ 한편 중국정부는 법률로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일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중국기업보다 유리한 超국민대우를 제공하고 있음.

- 특히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.
- 그러나 중국내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초국민대우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이같은 초국민대우 혜택이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.

-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기간으로부터 “2년간 면세, 3년간 감세” 특혜를 제공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일부 외자기업들이 투자를 허위신고하거나, 투자자금을 단기에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.
 - 중국기업들이 외자기업과의 합작을 위장 신고하여 혜택을 누리는 등 위법행위의 여지가 많음.
 - 지역별, 산업별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특혜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유자산의 유실문제가 야기됨.
 - WTO 규정 등 국제관례와도 모순이 발생함.
- 외자기업이 중국기업과 비교하여 누리는 초국민대우 혜택은 <표 1>과 같음.

<표 1>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超국민대우 비교

| | 외자기업 | 중국기업 |
|------|--|---|
| 조세징수 | 생산재 수입관세 면제 소득세 면세 재투자 조세 환급 | 생산재 수입관세 부과 지방소득세 납부 재투자 조세 환급 없음. |
| 경영관리 | 생산경영의 자주권 수출경영 자율권 사회적인 의무 부담 없음. | 생산경영 자주권 아직 없음. 대부분은 수출 경영권 없음. 다양한 사회적의무 부담. |
| 외환관리 | 획득한 외환 전액 보유 외환매매의 자유선택 외자기업에서 외환대출 가능 | 획득한 외환 일부만 보유 외환매매 자율권 없음. 외자은행에서 외환대출 제한 |
| 기업설립 | 법인 설립시 先설립, 後출자 출자액 분할 납부 관련 수속절차 간단 | 법인 설립시 先출자, 後설립 출자액 일시불 납부 관련 수속절차 복잡 |

- 한편 일부 분야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중국기업과는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低국민대우라는 규정도 존재하고 있는데, 이는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 규정과 모순됨.
- 광고 텔레비전산업, 신문산업, 무기생산산업, 무역금융업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됨.

- 토지사용권, 전력이나 용수, 운송, 교통, 전신 등의 서비스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중국기업에 대해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.
- 자동차, 항공, 전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을 49%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함.
- 수출실적이나 수출상품의 수량에 대한 제한규정이 존재함.

3. 내국민대우에 대한 정책조정 전망

- 중국의 정책당국자, 전문가들은 내국민대우 원칙의 준수는 중요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사회공익과 국가안전, 전통산업 보호, 특수한 자원활용 등의 측면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임.
- 따라서 향후 내국민대우 원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철폐함과 동시에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 - 이에 금후 중국정부는 국내 관련법률을 통일 정비하고, 조세제도를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구분없이 일원화해 갈 것으로 예상됨.
 - o 다만 산업구조의 고도화, 지역의 균형발전, 환경보호, 사회간접자본 확충, 기술개발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는 존속될 것으로 보임.
- 한편 내국민대우 논의 과정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외자기업 중 초국민대우의 특혜적인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성장한 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될 전망임.(***)